

부산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6나56502 판결 [점유회수청구의 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6나5650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5가합49005 판결

전 문

원고,항소인 태아건설산업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엔케이수산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16. 12. 7

판결 선고 2017. 1. 18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5가합4900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서구 A 전 1,015㎡, B 임야 345㎡, C 임야 1,499㎡, D 임야 78㎡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위 각 토지상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인도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박효관판사 이재욱판사 김진욱